

박사과정 운영규정

제정 1999. 03. 24
 개정 2005. 08. 22
 개정 2007. 01. 18
 개정 2008. 03. 01
 개정 2010. 11. 23
 개정 2014. 03. 01
 개정 2014. 09. 24
 개정 2015. 08. 12
 개정 2017. 02. 06
 개정 2017. 10. 19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박사과정 위원회와 박사과정 주임교수) 재원의 배분, 공통필수과목의 결정, 교과과정 개편, 본 규정에서 위임한 박사과정운영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함)의 제정 및 개정 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박사과정 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며, 박사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박사과정 주임교수를 둔다.

1. 위원회는 교무부학장, 박사과정 주임교수 및 각 전공분야별 1인의 박사과정위원으로 구성하며, 교무부학장이 위원장이 된다. 전공분야별 박사과정위원은 각 전공분야에서 정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박사과정 주임교수는 학장이 임명하며, 박사과정 주임교수는 본 규정과 위원회가 정하는 세칙에 따라 박사과정을 관리한다.
3. 박사과정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박사과정 주임교수가 소집하며, 재적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박사과정학생의 퇴출을 경영대학장에게 권고하는 경우에는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Full-time residency요건) 박사과정 입학 후 통산 2년 동안 (휴학기간 제외) Full-time resident이어야 한다.

제4조 (학술지 게재 요건) 박사과정학생은 박사학위논문 최종심사일 10일 이전에 박사과정운영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학술지 게재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014.03.01.개정>

제5조 (학회발표 요건) 박사과정학생은 박사학위논문 최종 심사일 10일 이전에 국내 또는 해외의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점수가 100% 이상이어야 하며, 교수와의 공저를 권장한다. 공저자가 있는 경우의 인정비율 등 자세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2014.03.01.개정>

제6조 (Working Paper작성 요건) 박사과정학생은 박사과정 재학 6학기 말까지 1편 이상의 논문을 Working Paper로 작성하여 박사과정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공개 Workshop에서 발표해야 한다.

제7조 (Proposal 요건) 서울대학교 본부에서 정한 박사학위논문 심사 절차를 밟기 전에 Proposal을 공개 Workshop에서 발표해야 한다. Proposal Workshop은 전공분야의 Workshop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Proposal의 절차는 세칙에서 정한다.

제8조 (논문심사) 박사학위논문 심사의 자세한 절차는 세칙에서 정한다.

제9조 (진행보고서 및 수강신청) 박사과정학생은 매년 2월 소정양식의 박사과정 진행보고서를 박사과정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박사과정학생이 수강신청을 할 때는 전공분야 박사과정 위원 및 박사과정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연구조교 장학금) 박사과정학생은 재학기간 동안 경영대학교수의 연구조교(Research Assistant)로 교수의 연구를 보조할 수 있다. 연구조교에게는 경영대학장이 정하는 소정의 월정 연구지원비를 입학시점부터 4년 동안(휴학기간 제외) 지급하며 등록금은 면제한다. 단, 연구조교는 장학금 총액(월정 연구지원비와 등록금 합계액)보다 적은 금액의 외부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연구조교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연구조교 장학금 총액과 같거나 더 많은 금액의 외부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구조교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외부지원금이란 장학금(본부지원 강의 연구 지원 장학금 포함), 급여, 외부 출강으로부터의 시간강사료 등 경영대학 외부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을 포함한다. 단, 방송통신대학교의 조교 장학금은 외부지원금 계산에서 제외한다.

1. 연구조교의 교수연구보조는 주당 최대 15시간으로 한다.
2. 연구조교의 교수별 배정은 각 전공 분야에서 추천결정하고 박사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박사과정 진행보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Working Paper 작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조교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4.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업성적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신입생 및 수료직전 학기는 성적 및 학점 기준을 제외한다.
 - 가. 등록금과 월정액: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9학점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평점평균 3.3이상 (단, 성적이 미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점평균 3.0이상인 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추천 가능) <2017.10.19.개정>
 - 나. 등록금: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9학점을 이수하고,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이상
 - 다. 월정액: 수료생의 경우 전 학년 평점평균 3.3이상 <2015.08.12.개정>
5. 정원 외 학생과 근로소득 연 1,200만원이상 소득자 또는 4대 보험 가입자(휴직자는 가능)는 제외한다. <2014.09.24.개정>

제11조 (강의) ① (교내강의) 박사과정학생이 아래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전공분야 교수의 합의와 박사과정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본 경영대학 및 서울대학교 학부 또는 석사과정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강의의 반대급부로 받는 시간 강사료 및 연구지원금은 제10조에 규정한 외부 지원금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4.09.24.개정>

1. 논문자격고사를 합격한 경우
2. (삭제)

② (교외강의) 박사과정학생은 입학 후 3년 동안(휴학기간 제외) 또는 3년 이후라도 논문자격고사를 합격하기 전까지는 교외강의를 하지 못한다. 박사과정학생은 그 이후의 기간이라도 교외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공분야 교수의 합의와 박사과정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외강의의 반대급부로 받은 시간강사료는 제10조에 규정한 외부지원금 계산에 산입한다.

제12조 (해외 학회참가 지원) 박사과정학생이 해외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박사과정 재학 중 경영대학장이 정하는 금액의 여비를 지원한다. 단, 박사과정학생의 해외학회참석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세칙에서 정한다. <2011.03.01.개정>

제13조 (해외 박사후과정 지원) 아래에 열거하는 조건을 모두 갖춘 박사학위 취득자에게는 해외유수 대학에서의 연구를 위해 1년 동안 소정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경영대학장이 정한다. 단, 동일 전공분야에서 2인 이상이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으며, 2인 이상의 유자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공분야 교수들의 합의에 의해 1인을 선정한다.

1. 박사과정 재학 중 제4조의 학술지 게재 요건 및 제5조의 학회발표 요건을 적용 받은 학생이어야 한다.
2. 박사과정 재학 중 해외학술지에 2편 이상 게재하거나 또는 전공분야 일류 해외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 일류 학술지 여부는 박사과정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3. 입학 후 6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4. 박사과정 위원회가 인정하는 해외 유수대학으로부터 박사 후 과정 또는 visiting scholar로 초청을 받아야 한다.
5.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사 후 과정 또는 visiting scholar를 시작해야 한다.
6. 전공분야 교수 전원과 경영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논문자격고사 및 졸업 시험) 박사과정학생은 입학 후 4년 내(휴학기간 포함)에 논문자격고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논문자격고사는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2017.2.6.개정>

제15조 (퇴출) 서울대학교 학칙과 상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박사과정학생의 퇴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9월부터 시행한다.
- ② 2005년 9월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제 4조에서 규정한 학술지 게재 요건에서 해외학술지에 1편 이상 또는 국내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③ 2005년 9월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전공분야 교수의 합의와 박사과정 위원회의 면담과 승인을 거쳐 제 14조에서 규정한 논문자격시험 및 졸업시험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박사과정 위원회는 이를 경영대학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각 전공분야에서는 본 규정에서 정한 박사학위수여 요건들을 강화하는 규정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공분야 규정이 우선한다.
- ⑤ 제10조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⑥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부터 적용한다.
- ⑦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 이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⑧ 제10조 4항,5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24일 이후 적용한다.
- ⑨ 제10조 4항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2일 이후 적용한다.
- ⑩ 제14조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6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 ⑪ 제10조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9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박사과정 운영 시행세칙

개정 2005. 8. 22
 개정 2008. 3. 01
 개정 2010. 11. 23
 개정 2011. 04. 01
 개정 2012. 05. 01
 개정 2013. 07. 18
 개정 2014. 02. 17
 개정 2014. 03. 01
 개정 2016. 08. 03
 개정 2017. 02. 06

1. 목적

이 세칙은 경영대학 박사과정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술지 게재요건 (규정 제4조)

- (1)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박사학위논문 최종심사일 10일 이전에 아래의 기준에 따라 14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 (2) 해외학술지 중에서 SSCI, SCI 및 SCI-E에 포함된 학술지만을 게재 요건으로 인정하며, 국내 학술지 중에서는 각 전공분야에서 4개 이하의 학술지를 추천 받아 박사과정 위원회에서 정하는 학술지만을 게재 요건으로 인정한다.<2016.8.3.개정>
- (3) 단독논문의 경우 경영대학 전공별 10대 해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 대해서는 300점을, 그 이외의 SSCI, SCI 및 SCI-E에 등재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 대해서는 200점을, 국내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 대해서는 100점을 인정한다.<2016.8.3.개정>
- (4) 단독 논문의 경우에는 100%, 저자의 수가 2인인 경우에는 70%만 인정하며, 3인인 경우에는 50%, 4인 이상인 경우에는 30%만 인정한다. 인정비율 계산에 있어서 서울대학교 교수는 공저자로 보지 않는다.
- (5) 학술지의 편집장으로부터 게재 예정증명서를 받은 경우도 학술지게재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한다.
- (6) 박사과정 학생은 학술지 게재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사실을 박사학위논문 최종심사일 10일 이전에 박사과정 주임교수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3. 학회발표 요건(규정 제5조)

- (1) 단독논문의 경우에는 100%, 저자의 수가 2인인 경우에는 70%만 인정하며, 3인인 경우에는 50%, 4인 이상인 경우에는 30%만 인정한다. 인정비율 계산에 있어서 서울대학교 교수는 공저자로 보지 않는다.
- (2) 박사과정 학생은 학회 발표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사실을 박사학위논문 최종심사일 10일 이전에 박사과정 주임교수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4. 공개 Workshop (규정 제6조 및 제7조)의 '공개 Workshop'은 전공분야가 주관하며 경영대학 전 교수와 대학원생을 초청하는 Workshop을 말한다.

5. Proposal 요건(제7조)

- (1) Proposal 발표일 전에 교내 논문심사위원의 명단이 확정되어야 한다.
- (2) Proposal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박사과정 학생은 Proposal 발표 10일 전에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박사과정 주임교수에게 보고하며, Proposal 발표용 논문 1부를 박사과정 주임교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박사과정 주임교수는 경영대학 전 교수와 대학원학생을 Proposal Workshop에 초청하는 안내문을 SK경영관과 LG경영관에 고시하여야 한다.
- (4) Workshop 직후 논문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며, 논문 지도교수는 그 결과를 박사과정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5) Proposal을 합격한 후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논문지도 교수를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의 발생여부는 박사과정 위원회가 판단한다.
- (6) 서울대학교 본부에서 정한 박사학위논문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Proposal이 통과되어야 한다.

6. 논문심사(규정 제8조)

- (1) 박사과정 학생은 서울대학교 본부에서 정한 박사학위논문 최종심사 예정일 10일 전에 그 사실을 박사과정 주임교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2) 박사과정 주임교수는 해당 학생이 경영대학에서 부과하는 조건들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최종심사 예정일 전에 논문지도교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 (3) 박사과정 학생이 이미 학술지나 기타 발간물에 게재한 논문을 졸업 논문의 일부로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일 논문이 다른 사람의 졸업논문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4) 위의 제6조 제 3항에서 게재한 논문이 타인과 공저한 논문일 경우에, 학생은 논문의 저작권자와 공저자로부터 논문의 전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졸업논문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배포가 되고자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도 같이 받아야 한다. 승인을 증빙하는 내용은 졸업논문에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논문전제에 필요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저작권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논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졸업논문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다.
<2011.4.1자 신설>

7. 해외 학회참가 지원(규정 제12조)

- (1) 박사과정 학생이 논문을 발표하지 않고 forum(post-presentation포함)의 형태나 공저자의 자격으로 해외 학회에 참여하거나, 해외 JOB 인터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금액의 여비를 지원한다. 박사과정 학생이 논문도 발표하지 않고 공저자의 자격이 아니면서도

해외 학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박사과정 위원회에서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박사과정 학생의 해외학회 논문발표 및 해외 JOB 인터뷰지원은 박사과정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해외 JOB 인터뷰 참가 시 증빙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7.2.6.개정>
- (3) 1회 지원한도는 미주, 구주, 오세아니아 지역은 최대 200만원으로, 중동 지역은 최대 100만원으로, 아시아 지역은 최대 50만원으로 하고, 지역별 지원 한도 내에서 항공비, 숙박비, 참가비를 실비로 지급한다(법인 여비규정 기준이내).
- (4) 지원 대상이 되는 해외학회는 전공별로 6개 이내로 정한다.(재무와 보험의 경우 각각 6개 이내로 인정한다)<2014.6.17.개정>
- (5) 학생 1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총액은 연간 300만원 이내로 한다.
- (6) 발표논문별로 1인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이미 지원 받은 논문과 내용상으로 동일한 논문에 대해서는 추후 지원하지 않는다.

8. 퇴출(규정 제 14조)

박사과정학생이 박사과정운영 규정에 정한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그 학생은 박사과정에서 퇴출되며, 박사과정 위원회는 그와 같은 사실을 경영대학장, 논문 지도교수, 그리고 논문 심사위원 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지도교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 박사과정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그 학생의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2012.5.1. 개정>

부 칙

- ① 이 세칙은 2005년 9월부터 시행한다.
- ② 세칙 제2조7항의 신설세칙은 2008년 3월 이후 게재논문부터 적용한다.
- ③ 세칙 제2조 7항은 삭제하며, 2009년 7월부터 적용한다.
- ④ 세칙 제6조3항의 신설세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⑤ 세칙 제7조2항의 신설세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⑥ 세칙 제8조의 단서조항은 201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⑦ 세칙 제2조는 2014년 3월 1일 이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하며, 2014년 7월 18일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기존 졸업요건 규정에 대한 각 전공별 해석과 새로운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⑧ 세칙 제7조 4항의 신설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⑨ 세칙 제2조 2항,3항의 신설세칙은 2016년 8월 3일부터 적용한다.
- ⑩ 세칙 제7조 ①항 ②항 개정규정은 ' 2017년 2월 6일 이후 적용한다.